

세이프가드협정의 국내산업 범위에 대한 해석*

Interpretation of Domestic Industry under Safeguard Agreement

이은섭(Eun-Sup Lee)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교수

김선옥(Sun-Ok Kim)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 |
| II. 세이프가드협정의 법적 성격 | 참고문헌 |
| III. 사법적 해석 | Abstract |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definition of the term "domestic industr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afeguards provisions of the WTO thr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 made by the WTO Appellate Body and panel. The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of safeguards include a rapid increase in import quantity, the exist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imports and the industrial injury. The domestic industry refers to the producers that account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total national production, or the national producers who produce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specific imports. Chronical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Reviewing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term "domestic industry" in application of the safeguards provi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has been made imposing weight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his interpretation is in contrast with tha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directly competitive" which has been interpreted with imposed weight on the commerci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hich can be measured by the final use or consumer's taste.

Key Words : safeguard agreement, domestic industry

* 이 연구는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5-079-BS0059)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머리말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는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제품(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수입품이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 혹은 절대적으로 증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SG협정 제2조1)에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는 덤핑방지조치나 보조금상계관세와 함께 무역구제조치로서 WTO 법 및 그 전신인 GATT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그것은 GATT가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에 의거한 최혜국대우원칙(1조)이나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11조), 또는 GATT에서 허용되고 있는 관세율의 상한을 결정하는 관세양허(2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들 조치는 WTO 제협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자유·무차별적인 국제무역질서의 안전장치(safety valve)로서 기능 하고 있지만, 이 조치를 남용하게 되면 WTO 체제의 기본적인 운용자체를 위협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들이 무역구제조치)로 취급받게 된 것은 수입수량의 증가에 의해서 자국 관련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수입수량을 어떠한 형태로든 예를 들면, 관세율의 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의 방법에 의해서 제한시켜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수량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둘째,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causal link)가 존재해야 한다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요건을 실제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구제조치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또한 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대두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취급하는 가에 의해 이들 발동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또는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제품」의 범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분석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는 문제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1(c)에서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정의를 「수입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생산자 전체(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또는 이들의 생산자 중 제품의 생산액의 합계가 제품의 국내총생산액의 주요부분(major proportion)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매우 총체적이고 관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

1) 救濟措置(protective measures)는 덤핑 및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및 불공한 거래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대응조치를 말하며, 수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2) 제4조 1 (c): in the determining injury or threat thereof, "a domestic indust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those whose collective

이와 같이 세이프가드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WTO의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협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정의상의 쟁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협정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세이프가드협정의 법적 성격

1. 세이프가드의 기원

세이프가드가 역사상 통상협정에 처음 나타난 직접적인 계기는 1939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모피사건이다. 미국은 1936년 캐나다와의 통상협정에서 모피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동의하였다. 당시 캐나다산 모피는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관세인하에 응했다. 그런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캐나다산 모피와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었던 노르웨이산의 모피가 미국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됨에 따라 미국 생산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미국은 캐나다와 다시 통상교섭을 하여 모피에 대해 수입수량을 제한하였다.³⁾

미국은 통상협정 체결 시에 예기치 않은 사태의 발전으로 인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1942년 멕시코와 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현재의 GATT 19조와 매우 유사한 세이프가드조항이 삽입되게 된 것이다.⁴⁾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이프가드는 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예상되지 않았던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으로 인하여 자유화 약속에 의해 손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세이프가드의 존재이유는 통상 교섭할 때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양허사항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사전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utput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3) Harvey Kaye & Christopher A.Dunn, 7A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 34:02, 2002.;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e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 1997, p.179.

4) B. E. Clubb, *United States Foreign Trade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vol.1 121. vol.2 163 ff.; John H. Jackson, *op.cit.*, pp.179-180.;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Dec.13, 1942, U.S.-Mexico, Art.XI.

2. 세이프가드의 성격 및 취지

일반세이프가드는⁵⁾ GATT 19조와 함께 보조협정인 세이프가드협정이 누적적으로(cumulatively) 적용되어 WTO 협정을 구성하고 있다.⁶⁾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덤핑이나 보조금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공정한 수입에 대해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이고,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을⁷⁾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GATT가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GATT 규정(19조)과 세이프가드협정 전문 및 제규정(2.1조, 3조, 4조, 5조, 7조)의 해석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논거가 제시되고 있으나, 상소기구(Appellate Body)⁸⁾에서는 첫째, 긴급사태에만 발동되는 특별한 규제조치(extraordinary remedies), 둘째,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입장간의 균형관계 유지, 셋째, 구조조정(structure adjustment)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 규제조치라고 하는 세 가지로 세이프가드의 성격을 특정하였다.

1) 특별한 규제조치

세이프가드(safeguard measures)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only in emergency situations) 발동되는 특별한 규제조치이고,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와는 달리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이 없는 경우에도 발동되는 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⁹⁾

세이프가드조치의 정당성을 특별한 규제조치로서 설명하고 있는 근거는 GATT 19조¹⁰⁾의 규정에 있

- 5) 일반세이프가드 이외에 섬유세이프가드(섬유협정 제6조)와 농업세이프가드(농업협정 제5조)가 있다. 섬유세이프가드는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발동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수출을 급증시킨 특정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일반세이프가드와 다른 점이다. 농업세이프가드는 일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수입품에 특정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6) GATT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United State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에서는 불가분의 관계(inseparable relationship)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WT/DS248,249,251,252,253,254,258,259/AB/R)(July 11, 2003), United States-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Report of the Appellate Body에서는 조화시켜(harmoniously)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WT/DS177,178/AB/R)(May 1, 2001).
- 7)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발동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동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가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경우보다 엄격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대항하는 조치의 성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8) United State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202/AB/R(February 15, 2002)
- 9)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e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 1997, p.176.; Christy Ledet, "Causation of Injury in Safeguard Cases: Why the U.S. Can't Wi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Spring, 2003, p.715.
- 10) GATT 19조: allows a GATT member to take a safeguard action to protect a specific domestic industry from an unforeseen increase of imports of any product which is causing, or which is likely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industry.

다. 19조에는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발전의 결과 그리고 자국이 이 협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의무(관세양허를 포함)의 결과」로 인하여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가맹국이 GATT 상의 의무, 특히 관세에 대한 양허의무를 부담했을 때에 예견되지 않았던 수입급증(unforeseen increase of imports)에 직면하여 국내생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구제조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¹⁾ 즉 양허를 포함한 GATT상의 의무부담에는 장래에 관한 일정의 예견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예견되지 않았던 사태가 발생하면 양허를 포함한 GATT 상의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게 된다.¹²⁾

2) 정책적인 타협

세이프가드조치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관계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생산자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정책적인 타협의 필요성에서¹³⁾ 조치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인정한 것으로 세이프가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¹⁴⁾

WTO 체제가 지향하는 국제무역의 자유화, 즉 관세를 양허하고 나아가 교섭에 부응하여 인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경쟁산업의 생산자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서 입법적인 조치로서 세이프가드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생산자는 압력단체로서 매우 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보다 세계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제도를 정비하여 생산자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견해는 세이프가드협정의 전문 및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부차적인 근거의 한도에서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가맹국에 있는 압력단체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세이프가드발동요건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GATT 19조의 기원이라고 말해지는 미국멕시코의 통상협정상의 면책조항은 이러한 견해에 의거하고 있다.

John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1969)*, p.554 참조.

12) Alan O. Sykes, "The Safeguards Mess: A Critique of WTO Jurisprudence", John M. Olin Law & Economics Working Paper No.187(2d Series),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May 2003, p.2.

<http://www.law.uchicago.edu/Lawecon/index.html> (2006.2.10)

13) John H. Jackson, op.cit., p.177.; Alan O. Sykes, op.cit., pp.25-28.

14) Christy Ledet, "Causation of Injury in Safeguard Cases: Why the U.S. Can't Wi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Spring, 2003, p.715.

15) Joost Pauwelyn, "The Puzzle of WTO Safeguard and Regional Trade Agre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ch, 2004, pp.110-114.

3) 구조조정

세이프가드조사를 심사할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권리가 있는가(세이프가드협정 2.1조, 3조, 4조에 의거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가)하는 발동요건을 심사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드조치가 세이프가드협정 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각한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고, 또한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발동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세이프가드협정의 前文에는 「구조조정(structure adjustment)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기(enhance rather than limit competition)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협정을 작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취지는 수입급증에 의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나타나면 생산자는 기술혁신 등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해당제품의 생산을 축소·조정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숨쉬기 위한 여유(breathing space)를 부여하기 위한 측면에서 세이프가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¹⁶⁾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시간적 유예를 부여하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시적인 기간 동안 국내산업을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¹⁷⁾ 이처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서 세이프가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근거는 협정 5.1조와 7.1조 및 GATT 19조 1항 (a)호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협정 5조에는 「가맹국은 ...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만(only to the extent necessary)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 하는 것으로 적용취지와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협정 7조에는 「가맹국은 ...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있어서만(only for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necessary)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 하는 것으로 세이프가드조치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GATT 19조 1항 (a)호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에 있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정당성과 조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Ⅲ. 사법적 해석

WTO의 세이프가드 분쟁사례(섬유협정상의 경과적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에서 「국내산업」 및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인정기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사례는 미국이 발동한

16) Mark Clough, "Who and EC Safeguard Measures-Legal Standards and Jurisprudence",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2003, vol.9(3), p.70.

17)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2nd ed, 1997, pp.176-178.

양고기세이프가드조치(2000.12)와 미국이 파키스탄 면사섬유제품에 대해서 발동한 경과적 세이프가드조치(2002.05)정도이고, 철강세이프가드사건(2003.07)에서는 USITC가 주장한 국내산업의 범위는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정합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을 뿐 패널은 동종제품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법판단을 회피하였다.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은 이를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생산자의 개념과 연결되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범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예컨대 국내생산자 중 대상제품의 수출자와 자본적 결합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를 국내산업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도 세이프가드협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¹⁸⁾ 이하에서는 이들 사건에서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 왔으며,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문제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동종제품의 인정기준

1) 쟁점사항

미국이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수입한 어린양고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사례에서¹⁹⁾ 동종제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논의의 쟁점으로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가한 수입제품과 동종제품이 양고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국간에 논쟁은 없었으나, 미국이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양고기의 가공업자와 양의 축산농가를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 제소국들은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c)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미국의 주장이 동종제품의 생산자만을 국내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c)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미국은 양의 축산농가를 국내산업에 포함시킨 이유로서 ① 원재료인 양과 가공제품인 양고기간에는 일관된 생산라인(a continuous line of production)이 존재하고 ② 양의 축산농가와 양고기의 가공업자간에는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인 일치(a substantial coincidence of economic interest)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으며, 또한 살아있는 양은 양고기 도매가격(wholesale cost)의 약 88%를 구성하고 있고, 축산농가와 가공업자간의 수직통합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미국은 위의 두 가지의 요건은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공업자와 함께 원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USITC에서 일관하여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 기준은 가공농산품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8) Eun Sup Lee, "Korean Version of Uruguay Round Agreement on Safeguards", *Michigan State University-DCL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9, Summer, p.414.

19) United States-Safeguard Measure on Import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omplaint by New Zealand(DS177) and Australia(DS178), WT/DS177,178/R(Dec 21, 2000).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서 발동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및 EC를 포함한 8개국이 공동으로 미국을 제소한 사건에서²⁰⁾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받은 철강제품 중에서도 특히 「철판류」(certain carbon flat-rolled steel)에 관한 USITC의 동종제품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제기되었다.

USITC는 판금(plate), 열연강판(hot-rolled), 냉연강판(cold-rolled), 표면처리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coated steel) 및 슬래브(slab)의 다섯 가지 제품을 단일의 철판류로서 동종제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5개 제품은 일관된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고(slab->plate->열연강판->냉연강판->표면처리강판), 또한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공통의冶金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급원료가 모두 스테인리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여 동종제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들 5개 제품은 산업이 수직 통합되어 있고, 생산설비가 공통인 점도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일시적으로 국내산업을 구제하는 것이 세이프가드조치의 목적이므로 제조공정을 고려하는 것은 이런 목적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USITC의 주장에 대해서 제소국들은 5가지 제품은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자동차제조사 및 건설업자)의 인식 및 관세분류의 점에서 동종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이들 5개 제품은 두께의 측면에서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고,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건설이나 기계제조전반에 사용되거나, 표면처리에 사용되거나, 또한 부패방지에 사용되거나 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상과 같은 차이에서 소비자도 이들 5개 제품을 상호 대체가능한 제품으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5개 제품이 공통의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고, 수직통합 된 산업이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USITC의 판단은 미국·양고기 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판정된 상소기구의 결정과도 모순되고, 세이프가드조치는 예외적인 긴급사태에만 발동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이므로 同種性의 판단도 이러한 세이프가드의 한정적인 목적에 정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USITC가 인정한 동종제품 및 국내산업에 대한 인정범위는 이런 목적에 정합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당사국들의 주장에 대해서 패널은 동종제품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법판단을 회피하였으나, 수입증가와 동종제품에 발생한 심각한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하고 있어 미국이 주장한 국내산업의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²¹⁾

미국이 파키스탄 제품의 면직방적사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사건에서 미국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면사생산을 하는 생산자만을 국내산업으로 정의하고, 수직통합 된 면사생산자가 자기 소비를 위하여 면사생산을 하는 경우 해당생산자는 시장에서 격리된 생산자로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산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섬유협정 제6조 2에 정합적인지의 여

20) United State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 of Certain Steel Products Complaint by European Communities(248), Japan(249), Korea(251), China(252), Switzerland(253), Norway(254), New Zealand(258), and Brazil(259), WT/DS248,249,251,252,253,254,258,259/R(July 11, 2003).

21) Alan O.Sykes, "The persistent Puzzles of Safeguard: Lesson from the Steel Disput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eptember, 2004, pp.547-559.

부가 문제로 되었다.

2) 패널의 견해

미국·양고기 세이프가드사건에서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이 세이프가드협정 4.1조(a) 및 2.1조에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세이프가드협정 4.1조(c)의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란 동종의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만을 의미하고, 소재, 원료(raw material or input) 등을 제공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세이프가드협정 4.1조(c)에 명시된 「생산자의 전체」(producers as a whole)의 문언은 조사되는 생산자의 수량적 벤치마크를 나타내는 관련 데이터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내산업에 소재 또는 원료공급자를 포함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예외적인 구제조치인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율하는 세이프가드 협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패널의 이러한 견해는 GATT 시대의 패널결정, 예를 들면 New Zealand-Transformers 사건²²⁾, US-Wine and Grapes사건의 패널 결정²³⁾, Canada-Beef사건의²⁴⁾ 패널 결정에서도²⁵⁾ 최종제품(end product)의 생산자만을 국내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지지된다고 하면서, 두 사건에서 패널의 판단은 본건의 양고기와 살아있는 양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패널은 미국이 살아있는 양은 양고기의 도매가격의 88%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고기 생산자가 입고 있는 손해는 축산업자에게도 파급(pass back)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축산업자도 국내산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 양고기생산자만을 보호해도 그 이익은 축산업자에게도 당연히 파급될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은 국내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소재나 원료제공자를 국내산업에 포함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산업에 대한 정의를 무제한으로 넓히게(open-endedness)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위의 두 가지 기준은 농산물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그 기준은 국내산업에 대한 정의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직접으로 경합하는 제품」은 동종제품의 경우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ITC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범위에 대해 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다.

22) Panel Report on New Zealand-Imports of Electrical Transformers from Finland(18 July 1985), BSID 32S/55.

23) 미국·와인 및 포도 사건에서 미국은 와인 제조업자와 함께 포도생산자도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패널은 와인제조업자와 포도생산자라고 하는 두 개의 산업이 별개로 특정할 수 있는 한, 두 개의 산업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동종의 제품의 결정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States-Definition of Industry Concerning Wine and Grape Products(28 April, 1992), SCM/71, BIDS 39S/436.

24) Report of the Panel on Canada-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Manufacturing Beef from the EEC(13 October, 1987), SCM/85.

25) 캐나다·EC 산 소고기 상계관세 사건에서 캐나다는 소고기 가공업자에 소의 생산자를 국내산업의 정의에 포함시켰으나, 패널은 수직통합의 비율은 국내산업의 비율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서 발동한 세이프가드사건에서도 패널은 국내산업의 정의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였으나, 세이프가드협정 및 GATT 19조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규정은 ①좁게 해석해야(interpreted narrowly) 할 뿐만 아니라, ②시장접근과 세이프가드에 관계되는 권리 및 의무간의 밸런스(balance between market access and safeguards rights and obligations)를 유지하면서 ③세이프가드협정의 취지 및 목적(object and propose)도 고려하고 ④규정된 문언을 통상의 의미(ordinary meaning of the terms)에 의거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다.

3) 상소기구의 견해

양고기사건에서 패널의 판정에 대해 미국은 ITC가 국내산업에 축산업자를 포함한 것을 세이프가드협정 4.1조(c) 및 세이프가드협정 2.1조에 위반한다고 결론한 패널 결정에 대해서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²⁶⁾

첫째, 세이프가드협정 4.1조(c) 및 2.1조에 의하면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자만이 「국내산업」에 해당되고, 동종이지 않거나 또는 직접 경쟁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자는 국내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USITC가 적용한 두 요건은 세이프가드협정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국내산업의 결정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소기구의 견해는 제4조1(c)의 문언에 충실 또는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자만이 국내산업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품보다도 생산 공정에 착목하여 국내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둘째, 당사국간에 동종제품이 양고기라는 점에는 논쟁은 없었으나, 미국이 독자의 기준에 의거하여 국내산업을 결정하고 있지만,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의 생산자까지 포함할 정도로 국내산업의 범위를 넓히게 하는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2. 직접 경쟁적인 제품의 인정기준에 대한 해석

1) 쟁점사항

미국이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면사에 대해서 섬유협정 제6조에 규정된 경과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사건에서²⁷⁾ 미국이 주장한 국내산업의 범위가 섬유협정 6.2에 정합적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미국은 국내산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면사를 생산하는 생산자만을 국내산업으로 정의하고, 수직통합 된 면사생산자가 자기 소비를 위하여 면사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

26) United States-Safeguard Measure on Import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omplaint by New Zealand(DS177) and Australia(DS178)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77,178/R(May 1, 2001).

27) United States-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on Combed Cotton Yarn From Pakistan Complaint by Pakistan Report of the panel, WT/DS192/R(May 31, 2001).

자는 시장에서 격리된 생산자로 인정하여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국내산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섬유협정 제6조 2에 정합적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6.2에 의하면 섬유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like and/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현실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수직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직물생산자가 자가소비를 위하여 생산하고 있는 면제방적사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한 것이 ATC 6.2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패널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분류하여 심사하였다.

첫째, 「직접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문구에는 수직 통합된 직물생산자가 자가소비를 위해(for their internal consumption) 생산하고 있는 제품도 포함되는가 아니면 이 문구는 수입제품과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actually competing with subject imports) 제품만을 한정하는가에 대한 직접경쟁제품의 인정범위에 관한 해석문제 둘째, 가맹국은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하는 제품 또는 동종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쌍방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both like products and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를 국내산업으로서 심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동종이지만 직접경쟁하지 않는(like but not directly competitive) 제품, 또는 동종은 아니지만 직접 경쟁하는(unlike but directly competitive) 제품, 또는 동종 및 직접 경쟁하는 unlike but directly competitive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국내산업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 것일까 에 관한 심사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2) 패널의 견해

미국이 파키스탄 제품의 면제방적사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국내산업의 인정기준은 섬유협정 제6조 2의 규정에²⁸⁾ 정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우선 ATC 제6조는 WTO 협정과 GATT3조(부속서 I)의 「직접적으로 경쟁제품 또는 대체가능 제품(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쟁제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제품이 소비자의 특정용도 및 기호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패널은 또한 Korea-Alcoholic Beverages 패널·상소기구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① ATC 6조의 「경쟁」이 직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련성이 낮은 경쟁을 제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② 직접적인 경쟁의 정도를 심사할 때는 상품의 교환가능성

28) 섬유협정 제6조 2는 「국내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afeguard action may be taken under this Article when, on the basis of a determination by a Member⁵, it is demonstrated that a particular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s to cause 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producing like and/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thereof must demonstrably be caused by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total imports of that product and not by such other factors as technological changes or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

(interchangeable) 혹은 특정의 필요성 및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성(alternative ways of satisfying a particular need or tastes)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섬유협정 제6조에 있는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하는 문구는 생산자보다도 「제품」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수직 통합된 면직물생산자가 면사를 시장에 판매하는지의 여부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해석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패널은 이 사건의 면사방적사에 대해서 수입제품과 국내생산제품은 기술명세서(specifications)상으로 동일하고, 수직 통합된 직물생산자는 내부시장(market)의 면제방적사와 외부시장(open market)의 수출상품을 포함한 면제방적사가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자가소비를 위한 면제방적사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명히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견해에 대해서 미국은 패널이 인용한 Korea-Alcoholic Beverages 상소기구의 보고서에는 ATC 제6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GATT 3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체가능한」의 문구를 GATT 제3조의 목적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있어,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동종제품의 경쟁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수직 통합된 직물생산자가 내부시장에서 판매하는지 외부시장에서 판매하는지는 경제적인 이해를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직접 경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반론을 기각하였다.

한편 ATC 6.2에 명시된 “and/or”의 해석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국내산업이란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하는 제품 또는 동종제품 및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쌍방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산업이란 동종이지만 직접 경쟁하지 않는 제품 또는 동종이지 않지만 직접 경쟁하는 제품 또는 동종이고 또한 직접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해석에 대해 패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첫째, 동종이지만 직접 경쟁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섬유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규정으로 되어 버린다. 둘째, 동종이지 않지만 직접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기술상의 변화, 소비자 기호의 변화(technological changes or changes in customer)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심각한 손해를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ATC 6.2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패널은 미국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된 면제방적사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ATC 6.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상소기구의 견해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의에 관한 패널의 결정에 대해 ATC 6.2조에 의하면 동종이지만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like, but not directly competitive)제품은 국내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미국이 수직 통합된 직물생산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한 것은 6.2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국내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첫째,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하는 문구는 생산자 지향적(producer-oriented)인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성질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지향(product-oriented)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인정기준은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의 유사성의 정도가 중요하고(이것은 「직접적으로」라고 하는 문구에 의해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경쟁한다」고 하는 문구는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수직 통합된 면직물생산자가 어느 시점에서 면사를 시장 판매하거나 아니면 자가 소비하는 가를 결정하여 경쟁의 정도를 판단하는 정적인(statical)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ATC 6.2조의 「생산한다」고 하는 문구는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동종」 및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하는 문구는 수입제품과 관련된 적절한 국내산업(appropriate industry in relation to the imported product)을 확정하기 위한 국내제품의 특성(characteristics attached to the domestic product) 관한 기준이고,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을지(degree of proximity)는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타당한 세이프가드조치(reasonableness of a safeguard)를 발동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넷째,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하는 문구에 의해 수입제품과 관련성이 낮거나 또는 희박한 경쟁관계(remote or tenuous competitive relationship)밖에 없는 동종이지 않은 제품(unlike products)의 생산자는 국내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러한 해석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첫째, 직물생산자가 어떤 시점에서 면제방적사를 상용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생산자가 생산하는 자가소비를 위한 면제방적사와 상용의 면제방적사간에 경쟁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둘째, 발동된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직 통합된 직물생산자에게도 편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셋째, 자가소비를 위한 수입제품도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 세이프가드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결정을 지지하고 미국이 수직 통합된 직물생산자에 의해 자가소비를 위한 면제방적사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ATC 6.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IV. 맺음말

세이프가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재되지 않더라도 통상협상 등에서 약속한 양허를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태발생시에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치이므로 그것이 남용되면 통

상의 자유화 그것이 크게 후퇴하게 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자유화체제의 존립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세이프가드 제도의 활용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한편 세이프가드는 통상협상 후에 예상되지 못한 사정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여 국내산업을 구제하고자하는 제도이다. 세이프가드제도는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유화체제로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국제통상체제의 건전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정책적인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 발동요건이 전통적으로 사용자측에 엄격하게 적용·해석되어 왔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국내산업의 판단요서로서 「동종제품」과 「직접 경쟁적인 제품」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들 제품의 인정기준을 취급한 판례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관련규정 자체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만, 패널과 상소기구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협정의 문구에 충실하여 해석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해석방법에 따르면 동종제품은 직접 경쟁적인 제품의 부분집합이고 그 경쟁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동종제품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주된 동일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이에 비하여 경쟁제품은 물리적 특성보다도 최종용도 또는 소비자의 기호로부터 판단가능한 상업적인 대체가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물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가는 결국 제품의 교차탄력성에 의해 결정되게 될것인 바 협정상 규정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의 여지는 매우 넓어 앞으로 국내산업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국간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나 해석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인 제품」의 인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의 회복이라는 세이프가드조치 및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산업」이나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인 제품」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국내산업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국내산업의 피해 상태를 파악 하고 「수입급증」 「심각한 피해」 및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발동요건을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논문, 문헌

- Clough, Mark, "Who and EC Safeguard Measures-Legal Standards and Jurisprudence",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2003, vol.9(3).
- Clubb, B. E., *United States Foreign Trade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vol.1 121. vol.2 163 ff.
- Kaye, Harvey & Dunn, Christopher A., *7A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 34:02, 2002.
-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e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 1997.
- Jackson, John 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1969*.
- Ledet, Christy, "Causation of Injury in Safeguard Cases: Why the U.S. Can't Wi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Spring, 2003
- Lee, Eun Sup, "Korean Version of Uruguay Round Agreement on Safeguards", *Michigan State University-DCL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9, Summer.
- Sykes, Alan O., "The persistent Puzzles of Safeguard: Lesson from the Steel Disput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eptember, 2004.
- Sykes, Alan O., "The Safeguards Mess: A Critique of WTO Jurisprudence", *John M. Olin Law & Economics Working Paper No.187(2d Series)*,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May 2003.
- Pauwelyn, Joost, "The Puzzle of WTO Safeguard and Regional Trade Agre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ch, 2004.

2) 분쟁판정보고서

- Canada-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Manufacturing Beef from the EEC, Report of the Panel, SCM/85,13 October, 1987.
- United States-Definition of Industry Concerning Wine and Grape Products, Report of the Panel, SCM/71, BISD 39S/436, 28 April, 1992.
- United State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 of Certain Steel Products Complaint by European Communities(248), Japan(249), Korea(251), China(252), Switzerland(253), Norway(254), New Zealand(258), and Brazil(259), WT/DS248,249,251,252,253,254,258,259/R, July 11, 2003.
- United State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248,249,251,252,253,254, 258,259/AB/R, July 11, 2003.
- United State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202/AB/R, February 15, 2002.

United States-Safeguard Measure on Import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omplaint by New Zealand(DS177) and Australia(DS178)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77,178/R, May 1, 2001.

United States-Safeguard Measure on Import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omplaint by New Zealand(DS177) and Australia(DS178), WT/DS177,178/R, Dec 21, 2000.

United States-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77,178/AB/R, May 1, 2001.

United States-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 on Combed Cotton Yarn From Pakistan Complaint by Pakistan Report of the panel, WT/DS192/R, May 31, 2001.